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0. 1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088호)	장철민	2020. 7. 17.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105호)	정부	2020. 7. 17.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1. 27.) 및 제4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2. 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0. 12. 3.)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31조제10항).

나.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의2 등).

다.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라. 법률용어 중 ‘가허가’를 ‘임시 허가’로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53조).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제목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허가(假許可)”를 “임시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가허가”를 각각 “임시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⑧ 시·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0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5항(중전의 제3항)제4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및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제1호의2 본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 제3항 · 제6항 ·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2 중 “제43조제6항”을 각각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가허가”를 각각 “임시 허가”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5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제21조제5항”을 각각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4 중 “제43조제6항”을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43조제10항”을 “제43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3조제11항”을 “제43조제1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6조제5호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2제2항·제3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 제21조제8

항·제9항,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냉·온수기, 정수기의 설치신고·변경신고, 샘물·염지하수 개발의 변경신고, 샘물등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 먹는샘물등·수처리제 등의 수입신고 또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 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①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 허가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서류

--.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①-----

(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플등의 개발을 가허가(假許可)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샘플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가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임시 허가-----.

②-----
임시 허가-----

-----임시 허가-----
-----.

③ -----
--임시 허가-----임시 허가--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략)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결격 사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취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

④ · ⑤ (생략)

<신설>

<신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

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⑧ 시·도지사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가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⑩ (현행 제6항과 같음)

⑪ ----- 제9항 -----

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 6. (생략)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생략)

<신설>

<신설>

-----.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

1. ~ 6.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⑨ (생략)

⑩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⑪ (생략)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생략)
 <신설>

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

 ----- 제4항 -----
 -----.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⑪ (현행과 같음)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신 설>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 3. (생 략)

4.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

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항-----

5. (현행과 같음)

⑥ ----- 제1항-----

-----.

⑦ 제1항-----

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 5. (생략)

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

⑧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항 -----
-----.

----- 제5항제1호 -----

-----.

2. ~ 5. (현행과 같음)

6. 제6항----- 제9항-----

7. 제9항-----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⑩ · ⑪ (생략)

제46조(폐쇄조치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

8. 제12항-----

⑨ ----- 제6항-----

-----.

⑩ 제7항-----

-----.

⑪ 제8항-----

-----.

⑫ · ⑬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

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47조(폐기처분 등) ① (생략)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③ ~ ⑥ (생략)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폐기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

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
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를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
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
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
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
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
한 경우

6. 제21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의2. ~ 12.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2항 · 제3항 · 제6
항 · 제7항 -----

5. -----

-----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

6. 제21조제10항 -----

6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제50조(청문)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 3의2. 제43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생략)

제51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6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2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청문) -----

-----.

1. (현행과 같음)
2. -----
----- 제43조제8항-----

- 3의2. 제43조제8항-----

4. (현행과 같음)

제51조(과징금 처분) ①-----

- 제43조제8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국고보조) -----

-----.

③ (생 략)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5. (생 략)

5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21조제5항·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 4. (생 략)

4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수수료)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21조제6항-----

6. 제21조제7항-----

7. 제21조제7항-----

제58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1조제6항-----

5. 제21조제7항-----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 7의3. (생략)

7의4. 제43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8.·9.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 6. (생략)

6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 ~ 19. (생략)

6.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제43조제8항-----

8.·9.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 제21조제10항-----

3.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1조제6항-----

7. 제21조제7항-----

8. ~ 19. (현행과 같음)

제61조(과태료)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관리한 자
- 2의2. (생 략)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 7. (생 략)
8. 제43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생 략)

③ (생 략)

제6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1항-----

4. ~ 7. (현행과 같음)
8. 제43조제12항-----

9. 제43조제13항-----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